

Part
II

 SW산업 관련 법령
(SW산업진흥법) 이해하기

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ver 3.0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Part II. SW산업 관련 법령(SW산업진흥법)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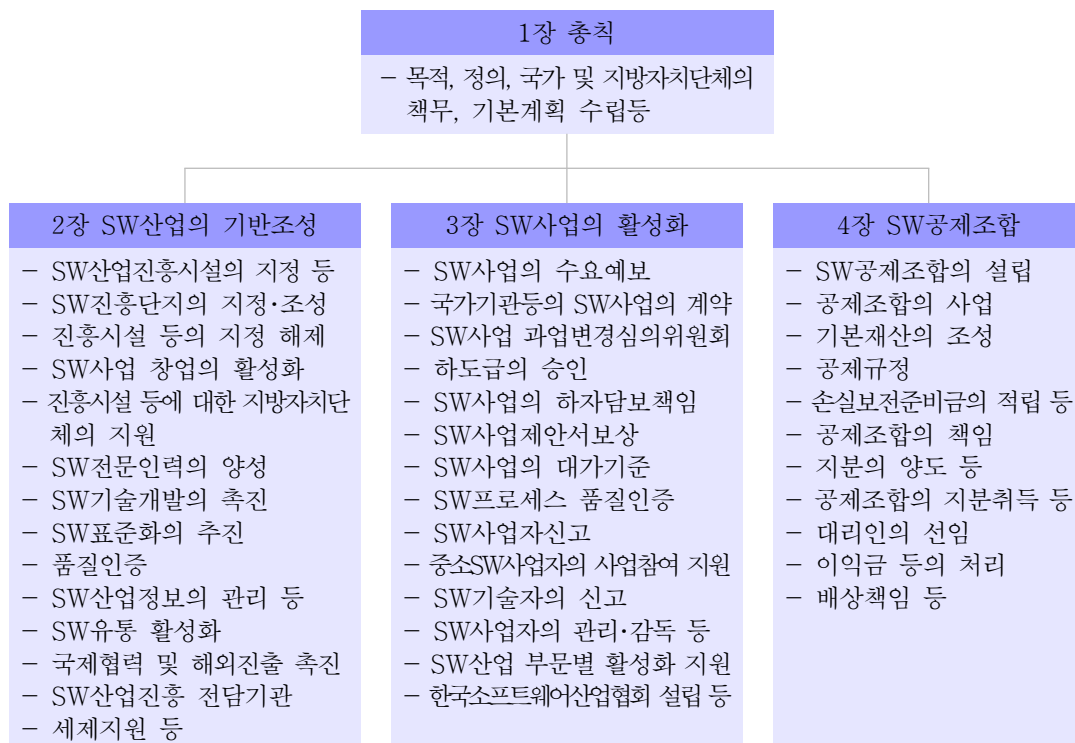
- SW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SW산업진흥법”에 대한 구성체계, 용어, SW사업 단계별 주요 법령 등을 숙지하여 SW사업수행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SW산업진흥법

● SW산업진흥법 제정 목적

- 「SW산업진흥법」은 SW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SW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SW산업진흥법 구성 체계



2. SW산업진흥법 주요 용어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1호】

-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

-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

-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

-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소프트웨어기술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6호】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절차·활동 등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7호】

-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8호】

-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구성된 지역을 말한다

● 발주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9호】

-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급하는자(수급인으로서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국외에서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 본다)를 말한다.

● 도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

- 도급, 하도급, 위탁 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하도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1호】

-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수급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2호】

-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하수급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3호】

-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자(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재하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SW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행정 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SW사업 단계별 관련 주요 법령

구 분	주요 법률	관련 규정(고시, 예규 등)
정보화 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	• 국가재정법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 국가정보화기본법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등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SW사업대가 가이드라인,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등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보호대책 수립지침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체계인증 등에 관한 고시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 전자정부법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요령 등

구 분	주요 법률	관련 규정(고시, 예규 등)
발주준비 단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 관한법률	• 정보화 기획 및 예산편성단계 + 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물 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운영지침 등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정보화 기획 및 예산편성단계 + 대기업인 SW사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SW기 술성 평가기준, SW사업자 신고요령, SW기술 자 신고요령,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SW사업 하도급계약정정성 판 단기준,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 운영규 정, 분리발주대상 SW 및 SW분리발주 가이드 라인(매뉴얼),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 얼 등
	• 저작권법	• SW임치제도, SW개발자 실명제 등
	• 국가정보화촉진기본법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SW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 발주준비단계와 동일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발주준비단계와 동일
	• 저작권법	• SW임치제도, SW개발자 실명제 등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등
SW사업 관리단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용역(물품구매)계약일 반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운영지 침 등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매뉴얼), SW사업 관리·감독에 관 한 일반기준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지침 등
	• 국가정보화기본법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구 분	주요 법률	관련 규정(고시, 예규 등)
감리 및 인수단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 SW사업 관리단계와 동일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등
	• 전자정부법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등
	• 국가정보화기본법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하자·유지 보수단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 감리 및 인수단계와 동일
	• 물품관리법	• 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패키지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 공개SW 유지보수서비스가이드라인 등
	• 저작권법	• SW임치제, SW개발자 실명제, 공공기관 SW관 리지침 등

[출처 : 한눈에 보는 SW산업법령-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SW산업진흥법 및 공공SW사업 이해하기 교육

● SW산업진흥법에 대해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 SW사업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SW사업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 목적

공공발주자 및 SW기업 대상으로 SW사업 관련 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공SW사업 수·발주 역량의 질적 강화를 위해 사업 발주 단계별 교육 시행

● 교육대상자

- 공공부문 발주/계약담당자 및 재직자
- SW기업 및 민간 SW사업 발주기업 종사자

- 주요 과정(민간)
 - － 공공 SW사업 법제도 이해 : 공공SW사업 발주단계별 법제도 소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 소개(공공SW사업 중심) 등
 - －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요청서 작성 원칙, 기재사항, 유의사항 소개,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작성방법 등 실무위주
- 개설과정

구분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횟수 (연간)
기본과정(공공/민간)	공공SW사업 법제도의 이해	1일(3시간)	8회
일반과정(공공)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실무)	1일(4시간)	8회
	SW사업 평가·선정·계약(실무)	1일(3시간)	7회
	SW사업 관리감독	1일(4시간)	7회
심화과정(공공)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및 관리감독	1일(7시간)	10회
민간 전문가 과정(민간)	제안서 작성과정(실무)	1일(7시간)	5회
	사업관리과정(실무)	1일(7시간)	5회

* 상기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확인 후 신청

- 지원사항
 - － 교육비용 무료(교재 무료제공)
 - － 과정별 교육과정 수료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교육 신청방법 및 문의
 - － 온라인 신청 : 소프트웨어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swit.or.kr>)
교육정보 메뉴에서 일정 확인 후 신청가능
 - － 교육관련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 (043-931-5357)